

## 7.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269호 1997. 7. 26

#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건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자재 표준화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창틀 등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정비됨에 따라,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사용해야 하는 사용의무화 자재 품목을 조정하여 건축표준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, 난방방식변화 등 건축기술 발달로 사용의무화가 불필요해진 난방용 주철방열기 등을 삭제하여 여건변화에 부응하고자 함.

주택회보